「행정위원회 규정」 신구조문대비표

2010. 12. 20. 개정 판 (시행 2010. 12. 20.) → 2004. 3. 1. 제정 판 (시행 2004. 3. 1.)

바뀜 4 · 신설 0 · 삭제 2 · 번호 변경 1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https://suleap.syu.my/r/61/compare?from=144&to=143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1. 오후 7:31:10 · 밑줄은 바뀐 부분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학교 행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, 의결하기 위해 행정협의회를 둔다.	**제1조(목적)** 학교의 행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운영, 심의하기 위해 대학 행정협의회를 둔다.
제2조(위원) 행정협의회 위원은 제1항과 같이 구성한다. 1. 총장(의장), 기획처장(서기), 부총장, 교목처장, 교무처장, 학생지원처장, 사무처장, 대외협력처장, 산학협력단장, 대학원장, 각 단과대학장, 재무실장, 기획부장, 교수 1인, 직원 1인 2. 위원 외에 필요 시 초청위원을 둘 수 있다. 3. 위원의 임기는 보직교수의 경우 보직기간동안으로 하며, 교수 1인과 직원 1인의 경우 2년으로 한다.	**제2조(대학행정협의회 위원)** 대학행정협의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 1. 총장(의장), 교무처장(서기), 학장, 사무처장, 대외협력처장, 학생처장, 기획실장, 교목실장, 재무실장, 대학원장, 의명처장(2) 2. 사항에 따라 필요한 부서장
제3조(기능) 행정협의회는 학교 행정에 관한 다음 사항을 협의 및 의결한다. 1. 학교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2. 정규직 직원 인사에 관한 승인 3. 제 규정의 승인 등 학교 행정에 관한 제반 사항 4. 건축에 관한 사항 5. 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6. 고충 처리 또는 갈등 조정에 관한 사항 7. 기자재, 장비 및 공사 등 1000만원 이상의 재정 안건에 관한 사항 8. 기타 총장이 제안한 사항	**제3조(기능)** 행정협의회는 학교 행정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협의하낟. 1. 교직원 고용 및 인사에 관한 사항 2. 학교 시설 및 장비 구입에 관한 사항 3. 교직원 장학에 관한 사항 4. 수당, 급여 규정에 관한 사항 5. 행사, 규정 승인 등 학교 행정에 관한 제반사항 6. 기타 총장이 제의한 사항 7. 고충 처리 또는 갈등 조정에 관한 사항
제4조(운영) 행정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, 별도 합의가 없을 시 참석위원의 과반수로 가결한다.	**제4조(행정협의회 회의 소집)** 행정협의회는 총장이 위원장이 되며 회의소집 필요시 총장이 이를 소집한다.
제5조(회의 소집) 행정협의회 회의는 필요 시 총장이 회의를 소집한다.	<삭 제>
제6조(회의록 작성)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총장에게 보고한다.	**제5조(회의록 작성)**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총장에게 보고한다.
제7조(소행정협의회) 행정협의회는 대학의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소행정협의회를 두며 그 구성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. ① (구성) 소행정협의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 1. 총장(의장), 기획처장(서기), 부총장, 교목처장, 교무처장, 학생지원처장, 사무처장, 대외협력처장, 산학협력단장. ② (기능) 소행정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 및 의결한다.	<삭 제>

현 행	개 정 안
1. 교직원 출장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. 교직원 장학에 관한 사항 3. 장소, 시설 및 버스 사용에 관한 사항 4. 행사 승인에 관한 사항 5. 비정규직 직원 고용 및 인사에 관한 사항 6. 기자재, 장비 및 공사 등 1000만원 미만 재정 안건에 관한 사항 7. 기타 총장이 제안한 사항	